

# 효자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5. 31. ~ 6. 3.(4일간)
-  감사범위 : 2014. 6. 10 ~ 2016. 5. 30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2건(주의 9, 시정 10, 현지시정 13)
    - 본 처분 19건(주의 9, 시정 10)
- 재정상 조치
  - 6건 1,203천원(세입1건 15천원, 회수5건 1,188천원)

## 지적사항 일람표

| 번호 | 소 관  | 건 명                                | 행정상<br>조 치   | 재정상조치        |                     |
|----|------|------------------------------------|--------------|--------------|---------------------|
|    |      |                                    |              | 구분           | 금액(원)               |
| 계  | 효자면  | 19 건                               | 주의 9<br>시정10 | 세입1/<br>회수5/ | 15,326<br>1,188,000 |
| 1  | 총무담당 | 복무규정 미 준수                          | 주의           |              |                     |
| 2  | "    | 보안점검 소홀                            | 주의           |              |                     |
| 3  | "    | 대가(代價) 지급 부적정                      | 주의           |              |                     |
| 4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정리 미흡                   | 주의           |              |                     |
| 5  | "    |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 시정           | 세입           | 15,326              |
| 6  | "    |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납부 지연                 | 주의           |              |                     |
| 7  | "    |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부적정                  | 시정           |              |                     |
| 8  | "    |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수집보상금 관리실태 소홀          | 주의           |              |                     |
| 9  | "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리 마을안길)             | 시정           | 회수           | 378,000             |
| 10 | "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리 도수로 설치)           | 시정           | 회수           | 153,000             |
| 11 | "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리 배수로 설치)           | 시정           | 회수           | 314,000             |
| 12 | "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들 배수로정비)           | 시정           | 회수           | 247,000             |
| 13 | "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 배수로 설치)            | 시정           | 회수           | 96,000              |
| 14 | 복지담당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증빙서류 누락                | 주의           |              |                     |
| 15 | 민원담당 | 주민등록 일제정리 소홀                       | 주의           |              |                     |
| 16 | "    | 세외수입(수입증지) 수입금 지연 납부               | 주의           |              |                     |
| 17 | 산업담당 | 관용차량 관리(차량정비대장) 미흡                 | 시정           |              |                     |
| 18 | "    | 농지원부 변동사항 처리 소홀                    | 시정           |              |                     |
| 19 | "    | 저온저장고 및 이동식저온저장고<br>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소홀 | 시정           |              |                     |

## 주요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에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공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출퇴근 시간 미 준수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행정■급 ○○○ 외 1명은 2015.1.6.일과 2016.1.4일에 당직 및 초과 근무를 하면서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감독 및 검사한 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리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의 3건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 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출납원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동 조례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함에도 지방재정시스템 이해부족과 수납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5년 수불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이 불일치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년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5,326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음

▶ 신용카드사용 포인트 15,326원을 세입조치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 납입)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금을 수납하면서 4건 1,326,000원을 지연 납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환경관리과-3457(2015.02.02)호에 관외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인원과 관계없이 전입신고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0ℓ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외 주민등록 전입자인 유○○ 외1인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하는 등 관리 소홀

▶ 미지급 세대 종량제 봉투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환경관리과-43063(2014.12.17.)호」 호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

대금 및 수집보상금을 단체 또는 마을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장 등 단체 대표자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5년 7월 7일 ♠♠리 부녀회 대표자 △△△의 개인계좌로 지급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대한 지출내역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수집보상금 지출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07.16. ☆☆☆☆(주) ●●●과 계약한 △△리(♣♣)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슬라브 시공을 위하여 동바리 및 구멍뚫기품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78,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78,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효자면에서는 2015.03.12. (합)○○○○ ★★★★★와 계약한 ♠♠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개거설치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53,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3,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효자면에서는 2015.03.27. △△△△(주) ■■■과 계약한 ♠♠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지수관을 계상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14,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14,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5.08.12. (주)○○○○ ♣♣♣와 계약한 ♡♡리(★★★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레미콘 소운반거리를 과다계상하고, 덤프트럭 대기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를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247,000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47,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2016.03.14. (주)♡♡♡♡ ●●●과 계약한 △△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배수구조물에 배수파이프를 계상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미 시공 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96,000원 (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96,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정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반기별 점검을 하여야 함. 지출기록부,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 구비가 잘되어 있으나 지출기록부에 있는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택배내역 등)의 확보미흡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하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효자면에서는 2015년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이장확인을 누락하였고,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한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 결과통지  
공고 시 공고부에 미등재하는 등 업무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 ~ 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지연하여 납입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예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차량 관리방법) 및 제25조 (기록관리)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 하며, 차량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목적차량 운영관리에 필요한 차량정비대장 기록 소홀

▶ 관용차 차량정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

- 농지법 제49조제3항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김○○외 109건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소홀

▶ 농지원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110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와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하고자 과수·원예 분야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및 이동식저온저장고를 지원 있으며, 지원한 시설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정기간(농가형 저온저장고 10년, 이동식저온저장고 7년) 사후관리토록 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농가형 저온저장고 및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기간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대장 미작성(32건) 하여 사후관리 업무 소홀
- ▶ 관리대장 미작성한 32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